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0. .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대해 피해보상액 산정시 피해예방방지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피해보상액 산정시 피해예방방지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원안대로 수정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피해보상액은 현행대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기
위해 차등을 둔 각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 ----- ----- “농업인등” ----- ----- ----- ----- “농작물등” ----- ----- ----- -.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 ----- ----- “농업인등” ----- ----- ----- ----- “농작물등” ----- ----- ----- -.
제4조(피해보상 요건) (생략) <신설>	제4조(피해보상 요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4조(피해보상 요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u>법률」 제12조에</u> <u>따라 해당 연도 5</u> <u>년 이내에 피해예</u> <u>방시설의 설치비</u> <u>용을 지원받은 경</u> <u>우</u> <u>2. 다른 법령(「농</u> <u>어업재해보험법」</u> <u>에 따른 보험을</u> <u>포함한다)에 따라</u> <u>피해보상 및 지원</u> <u>을 받을 수 있는</u> <u>경우</u> <u>3. 각종 법령의 규</u> <u>정에 따라 경작이</u> <u>금지된 지역에서</u> <u>농작물 등을 재배</u> <u>한 경우</u> <u>4. 피해보상을 신청</u> <u>한 자의 총 피해</u> <u>보상 산정액이 10</u> <u>만원 미만인 경우</u>	<u>법률」 제12조에</u> <u>따라 해당 연도 5</u> <u>년 이내에 피해예</u> <u>방시설의 설치비</u> <u>용을 지원받은 경</u> <u>우</u> <u>2. 다른 법령(「농</u> <u>어업재해보험법」</u> <u>에 따른 보험을</u> <u>포함한다)에 따라</u> <u>피해보상 및 지원</u> <u>을 받을 수 있는</u> <u>경우</u> <u>3. 각종 법령의 규</u> <u>정에 따라 경작이</u> <u>금지된 지역에서</u> <u>농작물 등을 재배</u> <u>한 경우</u> <u>4. 피해보상을 신청</u> <u>한 자의 총 피해</u> <u>보상 산정액이 10</u> <u>만원 미만인 경우</u>
제5조(피해액 산정기 준) ① 피해액 산 정은 농작물의 경우 에는 피해면적에 농 촌진흥청에서 발행 한 농축산 소득자료	제5조(피해액 산정기 준) ① ----- - 피해면적에 ----- ----- ----- -----	제5조(피해액 산정기 준) ① ----- - 피해면적에 ----- ----- ----- -----

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제6조(피해보상액 산

-----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거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

-----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거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

정) ① (생 략)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
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
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 해당

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피해보상액은 산
정된 피해액의 80퍼
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차등하여 산정한
다.

1. 견고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
물이 들어오기 어
려운 경우 : 피해
액의 80%

2. 경미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액의
50%

3.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
우 : 피해액의 3
0%

<삭 제>

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
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
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
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
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
존하고,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 제7호서
식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첩
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장에게 피
해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를 일으킨

제7조(피해신고 및 조
사) ① -----

----- 다
음 -----

----- 관할지역 --

5일 -----
-----.

1. 피해보상신청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
사) ① -----

----- 다
음 -----

----- 관할지역 --

5일 -----
-----.

1. 피해보상신청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야생동물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피해내역서

4. (생 략)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읍·면·동장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한 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삭 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읍·면·동장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한 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 제7조 제3항-----
----- 별지 제2호서식-----

-----.

② -----

----- 별지 제3호서식-----

-----.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 제7조 제3항-----
----- 별지 제2호서식-----

-----.

② -----

----- 별지 제3호서식-----

-----.

있을 경우에는 구체
적인 사유를 기술하
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10조(포획 신고) 제
9조에 따른 유해 야
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
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 중 소속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위·부정한 방
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
야 한다.

제10조(포획 신고) --

--- 시장-----

-----.

제13조(수당 및 여비)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위·부정한 방
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
야 한다.

제10조(포획 신고) --

--- 시장-----

-----.

제13조(수당 및 여비)

----- 범위-----

내에서 「구미시각
중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 14 조 (피 해 방 지 단

운영) ① 시장은 유
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피
해방지단”이라 한
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
단 활동에 따른 보
험료, 재료비 등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4 조 (피 해 방 지 단

운영) ① 시장은 유
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피
해방지단”이라 한
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
단 활동에 따른 보
험료, 재료비 등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